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9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3년 10월 2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충북경제자유구역청 특수업무수당 지급규정 신설(안 제3조)
  - 3급 600천원, 4급 500천원, 5급이하 400천원(안 별표2)
    - ※ 충주시청 근무자의 경우 200천원 가산 지급
-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규정 신설(안 제 4조)
  - 지급금액: 월 300천원(안 별표3)
  -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 24582호)에 따라 월 300천원 정액지급 되던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여 지급 하도록 개정

### 4. 검토의견

- 충북경제자유구역청은 2013년 4월 26일 개청하여 정원은 총 63명(1청장, 2본부, 5부)으로 승인되었으나, 업무량과 도민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해 도 본청 이관 인력 21명을 포함한 47명으로 출범하였음.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 제고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음. 다만, 출범 후 약 6개월이 경과한 시점에 본 조례개정안을 지연 제출한 것은 지

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수당 지급액 규모산정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